

의안번호	제655호
의결 연월일	2014년 월 일 (제 330 회)

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14년 6월 2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

655

제출연월일 : 2014년 6월 2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관련 상위법인 「기초노령연금법」의 폐지와 더불어 「기초연금법」의 시행에 맞추어 조례제명 및 상위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것임

2. 주요내용

- 조례 제명 변경

- 기초노령연금 ⇒ 기초연금

※ 현행 :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

- 상위법 적용 관련 자구 수정(안 제1조)

- 「기초노령연금법」제19조 제2호 ⇒ 「기초연금법」제25조제2항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”를 “충청북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기초노령연금법」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「기초연금법」 제25조제2항에 따라”로 하고, “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”를 “충청북도”라 한다.

제2조 중 “도”를 “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”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「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」	「충청북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」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기초노령연금법」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및 시·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「기초연금법」 제25조제2항에 따라.....충청북도.....
제2조(부담기준)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도는 100분의 20을 부담하며, 시·군은 100분의 80을 부담한다.	제2조(부담기준).....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...

관련법령 발췌

□ 기초연금법

제25조(비용의 분담)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비용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와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상호 분담한다. 이 경우,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·도의 조례 및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